

미출석 취업자 운영규정

제정 2016.10.01.
 개정 2017.03.01.
 개정 2018.03.20.
 개정 2019.02.01.
 개정 2020.02.24.
 개정 2020.09.14.
 개정 2022.02.21.
 개정 2025.09.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졸업예정자의 미출석 취업으로 인한 학점인정과 제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미출석 취업으로 인정받아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자로서 졸업 최종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산업체에 취업이 확정된 자로서 졸업 최종학기의 신청학점이 졸업요건에 충족된 자 (단, 초과학기 해당자 중 2학기 이상 연속으로 초과학기가 예상되는 경우 초과학기의 마지막 학기만 인정하며, 졸업 최종학기 신청학점의 졸업요건 충족여부는 계절수업 신청(취득) 예정학점을 제외하고 판단함)
3. 위 호의 자격을 갖추고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자

제3조(적용범위) ① 취업분야의 범위는 전공(유사)분야로 한다.

- ② 인정 교과목 범위는 실습과 이론 교과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단,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의 관련 교과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 ③ 교양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7조1항에 의거한다. (단, 초과학기자는 예외로 한다.)
- ④ 미출석 취업자는 다음과 같이 부서별 역할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부서	부서별 역할
스쿨 및 지도교수	대상학생 관리, 근무일지 확인, 성적평가, 성적사정
교무담당부서	대상학생의 취득학점과 신청학점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성적사정에 따른 최종 학점 부여
현장실습담당부서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통한 미출석 취업자 대상자 심의 온라인시스템 관리, 대상학생의 제출서류 확인 및 대상자 공유 미출석 취업자 연간 계획보고 및 결과보고

제4조(학점부여) 미출석 취업자는 취업일에 따라 학점부여를 다음 각 호로 적용한다.

1. 학기개시 일로부터 수업일수 1/2 이전까지의 미출석 취업자는 수강신청 교과목 전부를 산업체평가(60%)와 지도교수평가(40%)를 합산하여 패스제(P/F)로 학점을 부여한다.

- 2. 수업일수 1/2 이후부터 종강일까지의 미출석 취업자는 수강신청 교과목 전부를 등급제로 학점을 부여한다.
- 3. 미출석 취업자가 산업체를 퇴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학점을 부여한다.

취업 시점	복귀 시점	성적 반영
수업일수 1/2 이전	수업일수 1/2 이전 복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응시
	수업일수 1/2 이후 복귀	중간고사 - 응시 가능하면 응시 - 응시 불가능하면 기말고사 성적의 80% 반영 기말고사 응시
수업일수 1/2 이후	수업일수 1/2 이후 복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응시

제5조(제출서류) 미출석 취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최초 신청 시 미출석 취업자 신청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가능),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기간 6개월 이상 필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종강일 이후 발급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출석 취업자가 산업체를 퇴사할 경우, 미출석 취업자 중도포기원을 작성하여 퇴사일이 명기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의무) ① 미출석 취업자는 근무기간 중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수업일수 1/2 이전 취업자는 제4조1항에 근거하여 학점을 부여받으며, 수업일수 1/2 이후부터 종강일까지의 미출석 취업자는 등급제로 학점을 부여받기 위해 과목별 시험에 응시해야하고 과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미출석 취업자가 산업체를 퇴사할 경우 퇴사일 이후 즉시 수업에 복귀하여야 한다.
- ④ 미출석 취업자는 신청 시, 종강 시, 중도퇴사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도교수의 의무) 지도교수는 주기적으로 해당 학생이 작성한 근무일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여부와 관련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학점 불인정) ① 미출석 취업자는 취업일 이전 결석일과 취업일 이후(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에 명기된 일자) 결근일을 합산하여 4일 이상이면 학점을 불인정한다.

- ② 미출석 취업자가 위장취업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에 의거 성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졸업 후라도 성적을 취소하고 관련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25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미출석 취업자 학점인정 세부운영규정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 ③의 교양교과목의 이수 인정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